

심 사 보 고 서

의안
번호

2846

2025년 6월 27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I . 심사경과

1. 제출일자 : 2025. 5.26

2. 제 안 자 : 서울특별시장

3. 회부일자 : 2025. 5.29

4. 상정일자 : 제331회 서울특별시의회 정례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2025. 6.23)

- 안건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 및 답변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2025. 6.26)

- 원안가결

Ⅱ. 제안설명의 요지¹⁾ (기획조정실장 정상훈)

- 의안번호 제2843호 「서울특별시 지역교류협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등 14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대한 제안설명으로,
- 14개 변경 안건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 제2항에 따라 정책사업 지출금액의 20% 초과 변경을 위하여 지방의회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임
- 안건의 주요 내용은 2024회계연도 결산 결과 확정된 예치금회수액을 2025회계연도 예치금으로 증감 반영하는 등 재무활동을 3,855억원 증액 하였으며
- 도시재생기금, 공공시설등설치기금 등 5개 기금에서 정책사업비를 1,663억원 증액하고, 행정운영경비를 3천 4백만원 증액 편성하고자 함

1) 일괄 제안설명에 따라 개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차이가 있음

Ⅲ.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수석전문위원 엄지운)

1. 제안이유

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에 따라 2025년도 중소기업육성기금 투자계정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서울특별시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주요 변경사유로는 2025년 추가경정예산 편성으로 경제실 「서울 Vision2030 펀드」 2025년 신규 출자 100억원 및 민생노동국 「소상공인 더성장 펀드」 신규 출자 7억원을 반영하고,

나. 2024년 중소기업육성기금 투자계정 결산 결과, 예치금 회수가 126억원 증가 및 사업수입·사무대행비 정산 등을 반영하였음

다. 이에 따라 2025년 서울특별시 중소기업육성기금 투자계정 운용계획이 당초 852억원에서 1,121억원(269억원 증가)으로 증액됨

[수입계획 변경내용]

(단위 : 백만원)

장·관·항·목	당초 (A)	변경안 (B)	증감 (C=B-A)
수입합계	85,192	112,139	26,947
세외수입	6,923	10,508	3,585
사업수입(펀드회수금)	5,000	9,000	4,000
이자수입	1,902	1,505	-396
위탁비반환수입	21	2	-19
보전수입등내부거래	78,269	101,631	23,362
예치금회수	44,859	57,521	12,662
전입금	33,410	44,110	10,700

[지출계획 변경내용]

(단위 : 백만원)

정책사업 / 단위사업 / 세부사업	당초 (A)	변경안 (B)	증감 (C=B-A)
지출합계	85,192	112,139	26,947
중소기업육성을 위한 투자지원	60,674	83,374	22,700
서울Vision2030펀드 및 미래혁신성장펀드 조성·관리	60,674	82,674	22,000
서울Vision2030 펀드 조성	47,679	69,679	22,000
서울 미래혁신성장 펀드 조성	11,624	11,624	0
서울 벤처펀드 운영(사무대행비)	471	471	0
녹색기업창업펀드 제5호 조성	900	900	0
소상공인 더성장 펀드 조성	0	700	700
소상공인 더성장 펀드 조성	0	700	700
재무활동(경제실 창업정책과)	24,498	28,745	4,247
내부거래지출	15,543	15,543	0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 예수금(원금) 상환	13,970	13,970	0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 예수금(이자) 상환	1,573	1,573	0
보전지출(중소기업육성기금 투자계정)	8,955	13,202	4,247
예치금	8,955	13,202	4,247
행정운영경비(경제실 창업정책과)	20	20	0
기본경비(중소기업육성기금 투자계정)	20	20	0
기본경비	20	20	0

3. 검토의견²⁾

○ 2025년도 서울특별시 중소기업육성기금 투자계정 운용계획 변경안은 '24 회계연도 결산결과에 따라 수입계획중 **예치금회수**가 증가(126억 6,200만원)하였고, 금번 추가경정예산으로 편성한 전입금(107억원)을 증액하고자 수입계획을 변경(269억 4,700만원)하고, 수입계획과 연동하여 지출계획 중 **중소기업육성을 위한 투자지원**(227억원)과 **재무활동**(예치금, 42억 4,700만원)에 반영하는 등 지출계획을 변경(269억 4,700만원)하고자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제출한 것임

○ 수입계획의 경우 펀드 회수금(사업수입) 증가 등 **세외수입**을 당초(69억 2,300만원)보다 35억 8,500원을 증액하여 변경(105억 800만원)하고, '24회계연도 결산결과 예치금회수(126억 6,200만원) 및 전입금이 증가(107억원)하여 **보전수입등내부거래**에 반영하려는 것으로 수입계획을 당초(851억 9,200만원)보다 269억 4,700만원 증액한 1,121억 3,900만원으로 변경하려는 것임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³⁾는 정책사업 지출금액의 10분의 2를 초과하여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정하고 있는 바,

- 지출계획의 경우, 정책사업인 ①**중소기업육성을 위한 투자지원**에 대한 변경내역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라 구성된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통해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한 것으로 동 정책사업에 227억원을 증액하여 당초 지출계획(606억 7,400만원)보다 37.4% 증가(833억 7,400만원)된 것으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라 의회의 의

2) ■ 검토보고서의 경우, 백만원 미만 단위는 절사함

■ 증감률 등의 경우, 소수점 1자리까지 표기하고, 그 미만은 절사함에 따라 일부($\pm 0.1\%$ 범위내) 차이 있음

3)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기금운용계획의 변경)

① 생략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금운용계획의 정책사업 지출금액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지방의회의의 결을 받아야 한다. 다만, 정책사업 지출금액의 10분의 2 이하를 변경하려는 경우와 다음 각 호의 기금의 정책사업 지출금액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하 생략)

결 대상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됨

- 다른 정책사업인 ②**재무활동(중소기업육성기금 투자계정)**은 당초 지출계획(244억 9,800만원)보다 17.3%, 42억 4,700만원을 증액하여 변경(287억 4,500만원)하려는 것으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에 따라 의회의 의결이 필요한 사안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됨

○ 동 기금의 운용계획 변경안은 결산결과 발생한 여유자금 및 전입금 등을 정책사업 지출계획에 반영하려는 것으로 동 기금의 설치근거인 「서울특별시 중소기업육성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에 명시된 기금의 용도⁴⁾ 등을 고려하여 제출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과 같이 지출계획을 변경하는 것은 타당할 것으로 사료됨

- 다만,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금을 하려면 「지방재정법」 제18조⁵⁾에 따라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정하고 있어 동 기금지출계획과 관련된 출자 동의안을 지난 5월 27일 시의회에 제출하여 소관 위원회로 회부된 것으로 확인되는 바⁶⁾, 금번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중 지출계획한 출자금은 관련 동의안에 대한 소관 상임위원회의 심사결과와 연동하여 증액 여부가 결정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

○ 아울러 제출된 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의 경우 ① “지출계획” 변경내용중 **재무활동과 행정운영경비**에 조직개편 전 '24년도 기금운용부서(경제정책실 경제정책과)를 기재하고, 예수금 원금 상환과 이자 상환 금액을 잘 못 기

4) 「서울특별시 중소기업육성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제5조(기금의 용도)

② 투자계정의 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창업투자회사, 벤처투자조합, 신기술사업투자조합, 벤처투자모태조합을 통한 중소기업의 지원
2. 그 밖에 기금의 관리·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

5) 「지방재정법」 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③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6) ■ 「서울특별시 중소기업육성기금 투자계정 출자 동의안」

① 의안번호 : 2837, ② 제안(시장) : '25. 5.26, ③ 회부 : '25. 5.29

- 서울Vision2030 펀드 등 출자

■ 「서울특별시 중소기업육성기금 투자계정 출자 동의안」

① 의안번호 : 2839, ② 제안(시장) : '25. 5.26, ③ 회부 : '25. 5.29

- 소상공인 더성장 펀드 출자

재하였으며 ② “수입계획” 변경내용에는 **위탁비 반환수입**을 누락하였다가 제출('25. 5.26.)된 안건을 수정하여 다시 제출('25. 5.29.)한 바, 의회로부터 심사·의결받고자 제출되는 의안 작성에 보다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됨

〈표 3-1〉 중소기업육성기금 투자계정 운용계획 변경안

(단위 : 백만원, %)

정책사업 / 단위사업 / 세부사업		당 초 (A)	기 운 계 변 (B)	금 용 회 안 (C)	증 감 (C = B - A)	증 감 륜 (D = C / A)
지 출 합 계		85,192	112,139		26,947	31.6
중 소기업육성을 위한 투자지원		60,674	83,374		22,700	37.4
서울Vision2030펀드 신규조성 및 미래혁신성장펀드 조성·관리		60,674	82,674		22,000	36.3
서울Vision2030 펀드 조성		47,679	69,679		22,000	46.1
서울 미래혁신성장 펀드 조성		11,624	11,624		-	-
서울 벤처펀드 운영(사무대행비)		471	471		-	-
녹색기업창업펀드 제5호 조성		900	900		-	-
소상공인 더성장 펀드 조성		-	700		700	순증
소상공인 더성장 펀드 조성		-	700		700	순증
재 무 활 동 (중 소기업육성기금 투자계정)		24,498	28,745		4,247	17.3
내 부 거 래 지 출 (중 소기업육성기금 투자계정)		15,543	15,543		-	-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 정 예 수 금 (원 금) 상 환		13,970	13,970		-	-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 정 예 수 금 (이 자) 상 환		1,573	1,573		-	-
보 전 지 출 (중 소기업육성기금 투자계정)		8,955	13,202		4,247	47.4
예 치 금		8,955	13,202		4,247	47.4
행 정 운 영 경 비 (중 소기업육성기금 투자계정)		20	20		-	-

자료근거 : ①2025년도 서울특별시 기금운용계획중 중소기업육성기금(투자계정) 지출계획,
②중소기업육성기금 투자계정 운용계획 변경안('25. 5.26) 재구성

○ 그 외에도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는 기금운용계획안을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세출 예산안과 함께 지방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도록 하고 있고, 기금운용계획의 정책사업 지출금액의 10분의 2를 초과하여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하고 있어⁷⁾ 금번 변경안을 제출한 것으로 사료됨

- 서울시는 기금운용계획안을 세입·세출 예산안과 함께 제출할 때 기금지출 계획에 대한 사업별 설명서를 제출하고 있으나,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변경된 지출계획에 대한 사업별 설명서를 제출하지 않고 있음
- 사업별 설명서는 예산을 심사하기 위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으로, 기금운용 계획 변경안을 제출하면서 사업별 설명서를 누락한다면 사업에 대한 신설, 변경 등 구체적인 정보를 알 수 없어 변경요청된 지출계획의 적정성 검토에 한계가 있는 바,
- 향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제출할 경우, 변경된 지출계획에 대한 사업별 설명서를 첨부하여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회의 심사·의결권이 존중되도록 하고, 한정된 심사기간 동안 효율적인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IV.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V. 토론요지 : 「생략」

7)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기금운용계획 및 결산)

① 생략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안과 기금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세출 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지방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야 한다.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기금운용계획의 변경)

① 생략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금운용계획의 정책사업 지출금액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다만, 정책사업 지출금액의 10분의 2 이하를 변경하려는 경우와 다음 각 호의 기금의 정책사업 지출금액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하 생략)

VI. 소위원회 심사보고의 요지

1. 질의 및 답변 요지 : 생략

2. 조정소위원회 심사경과

가. 소위원회

○ 위원구성 : 예산안 등 조정 소위원회(11명)

－ 위 원 장 : 최민규(도시안전건설)

－ 부위원장 : 김경훈(교육), 정준호(교통)

－ 위 원 : 서호연(행정자치), 홍국표(기획경제)

이용균(환경수자원), 아이수루(문화체육관광)

도문열(보건복지), 봉양순(도시안전건설)

김종길(주택공간), 김원태(도시계획균형)

※ '25년도 본예산 심사시 구성된 소위원회로 계속 운영

나. 소위원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

○ 제1차 소위원회

－ 일 시 : 2025. 6.26(목) 12:00~13:00

－ 장 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실

－ 내 용 :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등 조정

VII. 부대의결 : 「해당 없음」

VIII. 심사결과 : 원안 가결 (2025. 6.26)

2025년도 서울특별시 중소기업육성기금 투자계정 운용계획 변경안

의안 번호	2846
----------	------

제출년월일 : 2025년 5월 26일
제출자 : 서울특별시장

1. 제안이유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에 따라 2025년도 중소기업육성기금 투자계정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서울특별시의회 의결을 받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주요 변경사유로는 2025년 추가경정예산 편성으로 경제실 「서울 Vision2030 펀드」 2025년 신규 출자 100억원 및 민생노동국 「소상공인 더성장 펀드」 신규 출자 7억원을 반영하고,
- 나. 2024년 중소기업육성기금 투자계정 결산 결과, 예치금 회수가 126억원 증가 및 사업수입·사무대행비 정산 등을 반영하였음
- 다. 이에 따라 2025년 서울특별시 중소기업육성기금 투자계정 운용계획이 당초 852억원에서 1,121억원(269억원 증가)으로 증액됨

[수입계획 변경내용]

(단위 : 백만원)

장관항목	당초 (A)	변경안 (B)	증감 (C=B-A)
수입합계	85,192	112,139	26,947
세외수입	6,923	10,508	3,585
사업수입(펀드회수금)	5,000	9,000	4,000
이자수입	1,902	1,505	-396
위탁비반환수입	21	2	-19
보전수입등내부거래	78,269	101,631	23,362
예치금회수	44,859	57,521	12,662
전입금	33,410	44,110	10,700

[지출계획 변경내용]

(단위 : 백만원)

정책사업 / 단위사업 / 세부사업	당초 (A)	변경안 (B)	증감 (C=B-A)
지출합계	85,192	112,139	26,947
중소기업육성을 위한 투자지원	60,674	83,374	22,700
서울Vision2030펀드 및 미래혁신성장펀드 조성·관리	60,674	82,674	22,000
서울Vision2030 펀드 조성	47,679	69,679	22,000
서울 미래혁신성장 펀드 조성	11,624	11,624	0
서울 벤처펀드 운영(사무대행비)	471	471	0
녹색기업창업펀드 제5호 조성	900	900	0
소상공인 더성장 펀드 조성	0	700	700
소상공인 더성장 펀드 조성	0	700	700
재무활동(경제실 창업정책과)	24,498	28,745	4,247
내부거래지출	15,543	15,543	0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 예수금(원금) 상환	13,970	13,970	0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 예수금(이자) 상환	1,573	1,573	0
보전지출(중소기업육성기금 투자계정)	8,955	13,202	4,247
예치금	8,955	13,202	4,247
행정운영경비(경제실 창업정책과)	20	20	0
기본경비(중소기업육성기금 투자계정)	20	20	0
기본경비	20	20	0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

제11조(기금운용계획의 변경)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금운용계획의 정책사업 지출금액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다만, 정책사업 지출금액의 10분의 2 이하를 변경하려는 경우와 다음 각 호의 기금의 정책사업 지출금액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나. 예산조치 :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반영

다.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라. 기 타 : 해당사항 없음

※ 작성자 : 경제실 창업정책과 송정민 (☎ 2133-4757)